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1. 11. / (총 17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전 화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전라남도	과 장	김 영 두		061-286-6010					
건강증진과	담 당 자	김 태 령		061-286-6040					
경상남도	단 장	노 혜 영		055-211-4960					
생활방역추진단	담 당 자	박 경 숙		055-211-498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충 환		02-202-3210					
취약시설지원팀	담 당 자	유 운 용		02-202-3258					
여성가족부	과 장	인 정 숙		02-2100-6341					
가족지원과	담 당 자	손 유 미		02-2100-6343					
문화체 육관광부	과 장	김 선 아		044-203-2881					
융합관광산업과	담 당 자	강 권 수		044-203-2879					
법무부	과 장	반 재 열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 당 자	박 수 완		02-2110-4079					

코로LHH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평생친구

- □ 박능후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 내 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역** 수칙은 더욱 촘촘하게 하면서 돌봄 공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휴관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사전예약제 등 각 단계에 맞는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현황

- □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1월 1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5.~11.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9.7명이다.
 - 이 중 **60세 이상**의 환자는 **253명이며 1일 평균 36.1명이 발생**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루 평균 67명이 발생하였으며, 충청권 13.6명, 경남권 7.6명, 강원 6.1명 등으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 다만,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워주, 순천 등 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5~11.1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7명	13.6명	2.7명	2.7명	7.6명	6.1명	-
60대 이상	25명	0.9명	0.3명	1.9명	3.7명	4.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 (11.10.09시기준)	69개	27개	10개	6개	15개	4개	13개









평생 친구

○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4개(11.10.9시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중환자에 대한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10.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9일(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이용)시설 11만
 5천여 개 중 10만3천여 개(89.8%)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는 10월 12일 이전의 1만9천여 개에 비해 **8만4천여 개가 증가**한 것이다.
- 정부는 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시행(10.12)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11.7.)을 계기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











-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 권고
-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
-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 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 으로 실시하다.
-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미련







-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시설에서는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의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 □ 정부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3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안감, 우울감,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과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하여 일반 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고립감 및 우울감 등에 대한 상활별 대처법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5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559건 제공하였다.
-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13개 언어로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여 가족 갈등, 노동 문제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146,226건 상담**을 제공하였다.
- 또한, 온라인 학습, 자가격리 등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노출이 많아진 청소년에게 온라인 과의존 예방을 지원하고,
- 가족 갈등 및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 1388**(전화, 온라인, 모바일)를 통해 **9월** 말까지 695,110건 상담을 제공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가족 및 구성원에게 약화된 가족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4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 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1.10.)하였다.
 -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이어야 한다. 또한,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리고 **개최일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 업계*의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방역 관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5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실태 점검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요양병원 1,473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448개소, 정신병원 419개소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0월 19일부터 수도권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당초 목표 인원(16만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는 일부 시설과 병원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소, 4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 서울 2개소 39명, 경기 2개소 2명
- 정부는 11월 9일(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감염 취약시설의 중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 * 기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부산 1개소(4명), 충남 2개소(3명)에서 확진자 발견
- □ 이와 함께 11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한다.
- 우선 어린이집이 **방역수칙 준수현황, 급식·위생·소방 등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일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별도로 1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전기·시설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6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방역실태 조사결과

- □ 법무부는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역실태를 조사**하였다.
- 동일 주소지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그 중 방역 강화국가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 177곳을 조사한 결과, 110곳이 생활공간 공동사용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에 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방역 당국(지자체)에 통보하고, 위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불허**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20개 국가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16만121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속히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자 통역 서비스도 1,272건 지원하였다.





평생친구

7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11.7.~)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13.~)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20% 감축한다.
 -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상**이 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축**한다.
 -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의 고의과실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감염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 확진자 104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 이들 중 86%가 입국 당일이나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으며, 68%는 무증상 환자였다. 한편, 81%는 입국 시 검사에서 확진되며,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나 격리해제 전 검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앞으로 해외입국자와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변경내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하고 있다.
 -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 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 또한, G버스 TV,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막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청사 내 모니터, 도로전광판(VMS),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도 내보낼 계획이다.

8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전남, 경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 (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소재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전파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일시폐쇄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순천시**는 **11월 11일(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중점관리시설 중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50㎡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테이블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 일반관리 시설도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적용된다.
-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 스포츠 관람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문화·여가시설의 이용도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 □ **경상남도**는 최근 한 주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추적조사와 진단검사, 방역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우선 창원시, 사천시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충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도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의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불법·유사방문 판매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 불법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고발하며,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부과한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실내 환기 등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평생친구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3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99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3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한편, 11월 1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79개소,
 ▲실내체육시설 1,105개소 등 24개 분야 총 7,337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평생친구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 친구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평생친구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항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